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안연월일 : 2010. 8. 19.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경위

가. 2010. 8. 19 제18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0. 8. 23)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음.

## 제안이유

가. 2010년 7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과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함.

## 주요골자

- 가.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중 제4호 “실·국장”을 “실·본부·국장”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호)
- 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변경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경제수도정책관·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며, 산업위원회 소관 직무 중 “항만공항물류국”을 삭제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항만공항정책과·항만공항시설과·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실·국장”을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경제수도정책관실·투자유치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산업위원회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항만공항정책과·항만공항시설과·중소기업지원과,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u>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u></p> <p>5. ~ 11. (현행과 같음)</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40px;">나. ~ 라. (생략)</p> <p>3. (생략)</p> <p>4. 산업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공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40px;">나. ~ 바. (생략)</p> <p>5. ~ 6. (생략)</p>	<p>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u>실·본부·국장, 담당관, 실·과장급</u></p> <p>5. ~ 11. (현행과 같음)</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기획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사무 중 경제수도정책관실·투자유치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40px;">나. ~ 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산업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항만공항정책과·항만공항시설과·중소기업지원과,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40px;">나. ~ 바. (현행과 같음)</p> <p>5. ~ 6.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제7조의2(경제수도추진본부)</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경제수도추진본부)</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치행정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개정 2006-03-20, 개정 2007-07-30, 개정 2007-10-08, 개정 2008-08-04, 개정 2010-02-22, 개정 2010-07-28>

**제7조의2(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수도추진 분야 발전비전과 전략 수립 및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균형발전 및 중·대형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
5.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
6.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7. 항만·공항 물류 및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8. 해양개발 및 항만·공항건설에 관한 사항
9. 특수지역(서해5도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07-28]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경제수도추진본부)** 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중소기업지원과를 둔다.

②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수도정책관과 항만공항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투자유치담당관과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항만공항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경제수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해안권, 접경권의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개발계획
2. 수도권 광역위 등 광역경제발전계획
3. 서울, 경기 등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4.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위원회 관련사업
6. 김포, 일산, 안산, 시흥,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인천경제권 구축
7.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
8. 경제관련 포럼(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인천경영포럼)
9. 다수인 민원분석 및 다각적 해결을 위한 민원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공 갈등의 합리적·체계적인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1. 다수인 민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투자유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투자유치 정책의 종합기획·조정
2. 개별기업·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3. 기업·투자유치 홍보·마케팅
4. 기업·투자유치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5.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6. 투자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업·투자정보·자료제공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업·투자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9. 기업·투자관련 유관기관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Buy Incheon 지원센터 운영
12.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총괄지도 감독
13. 그 밖에 다른 부서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 ⑥ 항만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행정협의회 및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2. 항만공사 관련 제반업무 협의
  3. Clean Port 조성사업
  4. 연안 크루즈 개발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해운(해상교통) 및 항만운영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6. 물류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
  7. 물류관련 국제협력업무
  8. 물류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9.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 조성
  10.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물류수요예측 및 기존시설의 과부족 판단 등에 관한 업무
  12.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 설정
  13. 화물터미널 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14. 철도, 육상, 해운 및 항공 화물유통정책의 종합 조정
  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주선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 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17. 물류기본 계획 수립
  18.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방안 연구
  19. 수송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20.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 사업

21. 항만공항 물류유통단지의 개발·지원
22. 물류유통 특성조사 및 물류시설 확충 등
23. 유통단지개발지정에 관한 업무
24. 물류정보화 사업 추진
25. 항만관련 물류에 관한 사항
26.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
28. 해양개발 관련 제반업무 조정 및 총괄
29. 해운·항공 복합운송 비즈니스 활성화에 관한 업무
30. 물류분야 민자유치 사업 추진
31. 개성공단 수출물량 인천항 운송 활성화
32.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
33. 항만 포트세일즈 추진
34. 공설 CFS 조성 및 확충
35. 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지원 및 등록
36. 인천국제공항 관련 업무 협조·조정
37. 지역항공사 설립 업무 추진
38. 지역항공사 활성화 지원 업무
39. 항공행정협의회 운영
40.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발 및 육성지원 업무
41. 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지원업무
42. 항공운송지원산업(MRO) 활성화 지원 업무
43. 항공관련 전문가 육성 지원 업무
44. 항공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업무
45. 인천국제공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 조정
46.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지원 업무
47. 인천국제공항 국제항공 네트워크 강화 업무
48.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
49. 국제항공연맹 연차 총회 관련 업무
50. 그 밖에 공항 기반 산업 등에 관한 업무

⑦ 항만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항 장기발전계획 관련 협의·조정
2.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총괄
3. 항만, 공항, 운하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도시계획 업무
4. 공항건설 관련 제반업무 협의 및 조정
5. 내항재개발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 총괄
6. 항만관련 물류단지 조성
7. 항만배후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등 제반업무
8.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협의
9. 공유수면(지정항만이외의 해면)에 대한 다음 사항
  - 가. 공유수면매립(해면) 기본계획 협의
  - 나. 매립면허 등 제반인가 업무
  - 다. 매립목적 변경 등 제반 처분 업무
  - 라. 매립지 활용 및 개발계획 수립
10. 도서낙도 서해5도 및 민통선 북방지역 등 특수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1. 특수지역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인운하 활용계획 수립(수상택시, 유람선 도입 등)
13.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계획
14. 경인운하 터미널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협의
15. 경인운하 건설관련 제반업무 및 조정·총괄
16.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17.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18.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제반업무
19. 연안정비사업 시행 및 협의·시행자 지정 등
20.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1. 연안의 실태점검·과태료부과 및 명예관리인 제도시행
22. 연안항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해양경계 철책 정비 총괄 업무

⑧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지원
3. 중소기업 신용보증 관련업무
4.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5.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지도감독
6. 지역내 중소기업의 정보산업 기술 지원
7. 중소기업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
8. 중소기업 창업 지원업무(대학 및 정보통신 관련 창업보육센터 지원업무 제외)
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0.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업체 지원
11. 관광공예품, 공예산업 및 우수토산품 등 개발보급
1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13.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1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15. 중소기업전문화 및 계열화 사업
16.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 관리
17.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18. 채광계획 인가 및 광산에 관한 사무
19. 염(함수) 제조허가 및 취소
20. 상공동원에 관한 사무
21. KS 표시허가 사후관리 공장검사 등에 관한 사항
22.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감독 및 품질검사
23. 품질관리 등급 사정업체 사후관리 및 시판품 검사
24. 불량공산품 단속 및 신고소 운영, 유통업소 지도
25. 전기용품 제조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6.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27. 승강기 제조업 및 보수업 등록 업무
28. 그 밖에 품질의 경영 및 촉진에 관한 사무

29. 계량기 제작·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30. 미터법 통일지도 및 계량사업에 관한 제증명 발급
31. 표기상품에 대한 실량검사
32. 계량기 검정기 유지관리 및 군·구 소관 계량기 정기검사 지도감독
33. 국제통상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등 관리업무
34. 중소기업 수출 지원
35. 수출관련 단체와의 제업무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36.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37. 해외상품 전시회 운영
38. 해외시장 설명회 및 우수 수출상품 해외 홍보
39.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40. 해외상설전시 및 판매장 운영
41.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작성 관리
42.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및 단위소요량 발급
43. 수출산업용 기자재 사후 관리
44. 군납업 등록 및 원산지 표시 검사업무
45. 외화 획득원료 이행기간 연장 신청업무 및 사용목적 변경 승인신청
46.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및 정비계획 추진
47. 산업재생 공단설립 및 관련업무 추진
48.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관리감독

##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2. 교육감
3. 부시장, 부교육감

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단, 인천 대학교는 처(실·국)장급 이상인 자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8.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9.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10.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11.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 다. (생략)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 라. (생략)

#### 4. 산업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재)인천광역시정보  
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 5. 건설교통위원회

가. ~ 바. (생략)

#### 6. 교육위원회

가. ~ 나. (생략)

<본항전문개정 2010-4-26>